

접수일	접수자	변호사
9/27	65m	

서울 행정법원

제 11 부

결 정

사 건 99아460 위헌심판제청

신청인 별지 신청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신청인 금융감독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99구19601호 자본금감소명령일부 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예관법률 제12조

제3항의 위헌심판제청을 구하다.

이 유 1. 위헌심판제청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피신청인은 금개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1차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정부등이 출자한 주식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등 보유주식과 차별함으로써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규정으로서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제344조제2항·제416조 내지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나.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평등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금개법은 금융거래의 안전 및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부실화된 사기업에게 정부등이 출자를 하여 이를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모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하여 투자자인 주주보다는 예금자 및 거래당사자의 보호가 더 강조되어야 하고, 정부등이 이러한 부실을 떠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1차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당해 금융기관이 또다시 부실화하여 자력으로는 갱생할 가능성이 없어 새로운 공적자금 투입이 요청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정부등이 제1차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각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부(負)로 되는 경우 특정주주 주식뿐만 아니라 제1차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등이 보유하게 된 주식까지 전부 소각한 후 다시 정부등이 출자하는 방법(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

금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을 택하든지 아니면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모두 소각하고 정부등의 보유주식은 병합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부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특정주주의 주식을 다르게 취급하여 정부등이 출자한 주식을 제외한 특정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그 차별에 있어 합리성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금개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 조항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8.

재 판 장 판 사 박 해 성

판 사 입 영 호

판 사 문 유 석

정 본 입 니 다.

서 울 행



법원

법원사무관 유

영

